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0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28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박 · 석,
서상열, 유정인, 이종환,
이효원, 장태용, 최민규,
허 ·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중 하나인 현수막과 관련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적인 표시방법으로 소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1조제1항제8호).
- 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기준에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안 제12조제2항제3호).
- 다.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의 내용으로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0조제1항제3호).
- 라. 시장 및 구청장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안 제30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 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⑥ 시장은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거나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현수막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 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 적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기준 등) ① (생략)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 야 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 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3. ----- -----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4. ~ 6. (생략)

③ (생략)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 설>

② ~ ⑤ (생략)

<신 설>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

1.·2. (현행과 같음)

3.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거나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
는 등 환경친화적 현수막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추진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제6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제1항 제8호	×	소재에 대한 자구를 추가하는 것 등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제12조(현수막 지장개사대의 설치·관리기준 등)제2항제3호	×	개사대의 게시기간의 예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등은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3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제1항제3호	×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4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제6항	△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제6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크기, 업체, 설치규모 및 지원대상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교육 및 홍보) 및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크기, 업체, 설치규모 및 지원대상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